

11월 18일의 회의에 관한 김창록의 보고

지난 11월 18일 토오쿄오의 VAWW-NET Japan사무실에서 개최된 「2000년법정」 준비회의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양 총무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김부자씨·히가시자와 변호사·카와구찌 변호사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 기소장의 피고에 관해

일본의 변호사들로부터 한국측 기소장에 기재된 피고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다음 두가지입니다.

1) 키타무라(北村)부부에 관해서는 본문에서만 언급하고 피고의 명단에서는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첫째, 판사단 회의에서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피고를 선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위의 합의와도 관련하여, 무엇보다 피고의 방어권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그들이 특별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던 민간인의 경우 방어권 제한의 정당성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하급 장교나 일반 병사 혹은 민간인의 경우, 일본에서도 기소할 수 있는 다수의 명단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법정」에 반대하는 측이 방어권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국측에서도 키타무라 부부는 본문에서만 언급하고 피고의 명단에서는 빼 주었으면 좋겠다.

2) 피고 중 토오조, 이타가키, 우메즈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아닌가? 한편 한국측 피고의 명단에서는 빠진 하타와 아베의 경우 보다 증거가 확실한 것은 아닌가?

위와같은 일본측 변호사의 지적과 관련하여, 저로서는 위 1)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법정의 진행에 관해

법정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1) 검사에 의한 기소장 낭독, 2) 피해자 증언, 3) 검사에 의한 증거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각국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 총무님이 일본측의 이의 제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

였고, 일본측 변호사들도 각국이 진행하는 법정 구성에 대해서는, 위의 최소한의 내용이 담기는 것을 전제로, 다른 나라가 애당초 간섭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3. 증거일람에 관해

김부자씨로부터 일본측에서 작성한 (증거일람(양) 총무님께서 지참하셨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 법정 당일에 직접 사용할 것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김부자씨는, 검사 혹은 증인이 발언할 때, 관련 증거를 스크린에 비치게 하고자 하며, 그러기 위해 파워 포인트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한국측이 요청한다면 일본측에서 담당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실제로 사용할 증거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측에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증거일람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작업을 해 오신 여러분께서 살펴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김부자씨로부터 일본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번 주 중, 그러니까 26일까지는 선정된 자료의 일람을 알려 주기 바란다는 부탁도 있었습니다.